

農産物의 關稅相當額 측정상의 문제점 및 적용의 한계

崔世均*

金東玟*

- I. 序論
- II. 關稅相當額의 測定
- III. 關稅相當額 測定上の 問題點
- IV. 關稅相當額 適用의 限界
- V. 要約 및 結論

I. 序論

1930년대 이래 비관세조치(특히 수입할당제)에 의한 수입규제는 관세에 의한 수입규제 또는 산업보호와 더불어 널리 이용되어 왔다. 1970년대초의 석유파동으로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Inflation), 실질소득의 감소,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는 경기침체와 함께 세계적인 보호주의로의 회귀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보호주의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으며, 관세장벽 이외에 각종 비관세장벽(수입할당제, 수출자유규제,

검역, 행정절차에 의한 간접적 규제 등)이 동원되어 자유무역을 저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호주의로서의 회귀현상과 GATT 규정에 위반되는 각종 무역왜곡조치의 발동은 국제사회에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확립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986년 시작된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UR)의 농업분야 협상에서는 주로 농산물무역에 왜곡을 초래하는 각종 국내보조 및 국경조치를 감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에는 각종 비관세조치를 관세조치로 전환시켜 관세라는 단순화된 지수를 통해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자는 관세화(Tariffication)가 포함되어 있다.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는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논의를 간소화하여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각종 비관세조치는 무역왜곡과 보호수준의 측정 및 각국간의 비교가 어려워 다자간 협상에서 각국이 일정

* 責任研究員

수준으로의 감축에 합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관세는 보호수준의 정도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각국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UR농업협상에서도 관세가 비관세조치보다 무역규제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일반적 이유외에도 각국별로 서로 다른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보호조치들을 일정한 틀에 묶어 하나의 정해진 지수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보호수준을 감축해야 하는 것이 협상진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종 보호조치의 관세상당액(Tariff Equivalent, TE)으로의 전환이 제안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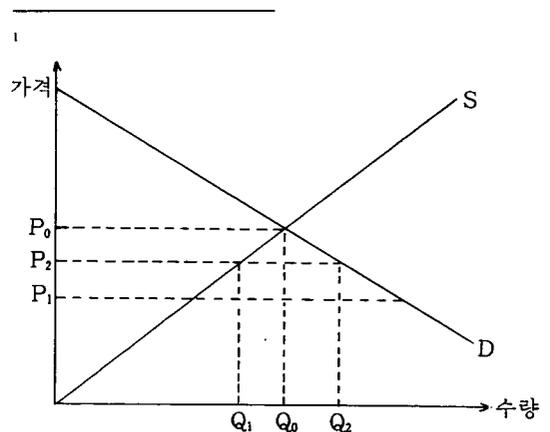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액으로의 전환에 대해 각국별로 품목에 따라 입장의 차이는 있으나 협상참가국들 사이에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도 각종 비관세조치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상당액의 측정 및 이를 통한 보호수준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비관세조치의 관세로의 전환이 상당한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측정된 관세상당액의 높낮이에 따라 관세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상당액을 측정하고 관세상당액의 측정 및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關稅相當額의 測定

관세상당액이란 현재 비관세조치로 보호받고 있는 상품에 대한 모든 비관세보호조치를 관세로 전환할 때 비관세조치에 상당하는 보호율(증가세) 또는 보호액(증량세)

을 의미한다.¹ 관세상당액의 간편한 측정방식으로는 수입권 경매가격 방식과 가격차 방식을 들 수 있다. 수입권 경매가격 방식은 수입권이 경매에 의해 판매될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가격(보통 항구도착가격)에 부가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비율을 관세상당액(증량세 또는 증가세)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수입권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동질성 여부, 국내외 기준가격 설정의 문제점에 관계없이 비교적 정확하고 간편하게 관세상당액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가격차 방식은 어떤 상품의 국내외 가격차를 그 상품의 관세상당액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국내가격(보통 도매가격)과 외국상품의 국내도착가격(보통 CIF가격)과의 차를 주로 이용한다.

UR농업협상에서 관세상당액 측정을 위해 채택된 것은 가격차방식이다.



- P_0, Q_0 : 균형가격 및 균형수량
- P_2 : 수량제한을 Q_1, Q_2 만큼 할 경우 수입국에서의 국내가격
- P_1 : 국제가격
- $P_2 - P_1$: 관세상당액(Tariff Equivalent)

표 1 의장초안에 기초한 관세상당액 측정기준

품목분류	국제가격 ¹⁾	국내가격	기준년도	가공품	품질(종) 차이	TE표시방법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품목: HS 4단위 • 기타품목: HS 6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국 도착가격(CIF) • 인접국의 CIF가격 • FOB가격으로 부터 전환된 CIF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시장가격(대표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 TE에 가공품에 대한 원료 혼합 비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계수를 TE측정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량세 또는 종가세로 표시하되 1986-88평균 및 각년도별 TE를 표시

1) 당해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자국화폐로 환산

2) 종량세는 국내가격-국제가격, 종가세는 [(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100

UR협상 농산물그룹 의장초안에서 밝힌 관세상당액 산출기준은 <표1>과 같다. 가격기준은 1986-88평균으로 하고 국내가격은 대표적인 연평균 시장가격을 그리고 국제가격은 수입국의 CIF가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국의 CIF가격의 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접국의 CIF가격을 이용하거나 FOB가격을 CIF가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내의 상품간에 품질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품질계수를 이용하여 관세상당액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공품의 경우에는 가공품 생산에 사용된 원료와 최종 생산물과의 비율을 원료의 관세상당액에 곱해서 관세상당액을 측정하면 된다. 대상품목의 세분화 정도는 HS 4단위 내지 HS 6단위이며, 이는 실제로 국제무역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분류기준 HS 10단위에 비해 상당히 단순화된 것이다.

농산물그룹 의장초안에 기초하여 측정된 주요 농산물의 관세상당액은 <표 2>와 같다. 관세상당액 측정에 있어 국내가격으로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이 조사한 도매가격이 이용되었으나, 한국은행의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농산물 유통공사와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도매가격이 이용되었다. 정부수매가격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품목은 정부수매가격을 국내대표가격으로 하였다. 국내시장의 대표가격으로 도매가격이 사용된 것은 관세상당액 측정에 이용된 국제가격이 도매단계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판단되어 동일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을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국제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국 도착가격인 CIF가격을 사용하였고 수입량이 없거나 미미하여 국내 CIF가격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국인 일본 또는 대만의 CIF가격을 사용하였다. 인접국의 CIF가격도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가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FOB가격에 수송비와 보험료를 가산하여 CIF가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수송비와 보험료는 상품의 종류, 선적량 등에 의해 차이가 있으나, 품목별, 선적량별,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료와 운송비는 국내 해운업계의 자문에 의해 국제가격의 10%로 책정하였다. 환율은 한국은행의 연평균 매매기준율을 사용하였다. 가공품의 경우 각 제품별로 관세상당액이 계산되어야 하나 하나의 원료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이라 할지라도 혼합비율이 다른 수많은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품별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공기술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원료 농산물의 관세상당액을 가공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품목별 관세상당액은 국내 농산물의 외국 농산물과의 가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세상당액을 통해 국내농산물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관세상당액을 농산물 류별로 보면 곡물류가 가장 높으며 다음은 축산물중 유제품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과일류는 기타 농산물에 비해 관세상당액이 낮게 나타나 농업내부에서는 비교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으로 보여진다. 품목별 관세상당액을 살펴보면 쌀이 505%, 대두가 457%, 옥수수가 338%, 보리가 276%이다. 축산물로는 쇠고기가 168%이며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각각 26%와 41%로 나타나 생산성 향상 여하에 따라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품목별 관세상당액

품 목	관세상당액 (TE)	국내가격 (1986~88)	국제가격 (1986~88)
쌀	505%	1,552원/kg	258원/kg
맥 주 맥	439	713	132
보 리	276	387	103
옥 수 수	338	357	83
대 두	457	1,069	193
팥	510	1,573	262
땅 콩	300	2,267	519
참 깨	1,203	6,335	556
누에고치	64	5,551	3,380
쇠 고 기	168	4,653	1,517
돼지고기	26	1,864	1,482
닭 고 기	41	1,489	1,053
탈지분유	433	4,300	844
전지분유	235	3,875	1,160
버 터	268	3,585	980
치 이 즈	529	7,000	1,100
계 란	20	769	654
감 자	115	310	148
양 파	113	378	181
마 늘	170	1,818	697
고 추	470	4,917	923
고 구 마	301	348	90
바 나 나	779	4,216	479
파인애플	251	1,450	416
감 껍	105	715	358
포 도	93	2,837	1,471
사 과	108	944	456
배	147	881	359
복숭아	49	696	470
단 감	57	1,691	1,097

계란의 관세상당액은 20%로 측정된 품목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참깨는 1,203%로 가장 높았다. 과일류에서는 복숭아와 단감이 50% 내외의 낮은 관세상당액을 나타냈다.

이러한 관세상당액을 통해 볼 때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 닭고기와 계란 그리고 과일류 가운데 복숭아, 단감, 사과, 포도, 감귤 등 일부 품목들은 일단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으로의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관세상당액 측정에 이용된 가격자료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품질, 계절성, 기호 등에 대한 가격의 적 요소를 고려한 다음에야 가능하다.

Ⅲ. 關稅相當額 測定上の 問題點

관세상당액 측정상의 주요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준가격 선정의 문제점; 의장초안에 제시된 국내 기준가격은 해당품목의 대표적인 연평균 시장가격이다. 국내가격은 농가판매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등이 존재하며 모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수입상품과의 가격비교를 위해 일단 도매가격을 국내시장가격으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각각 다른 가격조사기관에서 각각 다른 조사시점, 다른 등급의 가격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된 가격자료는 특히 조사지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 도매가격 가운데에도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어떤 자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관세상당액은 변화할 수 있다. 기준 국제가

격의 선정에는 국내가격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국내 항구도착가격(CIF)이 존재한다면 국제가격 선정의 문제는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관세상당액 측정대상 품목들이 대부분 비관세조치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고 있어 수입실적이 미미한 경우가 많고, 상당량의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도 독과점적으로 수입되고 있어 정확한 국제기준가격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인접국의 CIF가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인접국간의 운송 및 유통비용의 차이가 무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인접국과의 소비패턴의 차이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크고 따라서 수입가격의 차이도 크다. 국제가격 기준을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할 것인가도 명료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품목분류의 문제점; 국제무역은 HS 10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장초안에서 밝힌 HS 4단위 또는 HS 6단위로 품목을 분류하여 관세상당액을 측정할 경우 HS 4단위 또는 HS 6단위에 속한 HS 10단위까지의 품목들은 모두 동일한 관세상당액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HS 10단위의 정도로 세분화된 품목이 이를 포괄하는 상위그룹의 품목과 상이한 가격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쇠고기라고 조사된 가격은 HS 4단위 또는 그보다 상위그룹의 품목분류에 대한 가격이며 이는 실제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HS 10단위의 부위별, 보관상태별, 절단상태별 쇠고기 가격과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HS 10단위로 관세상당액을 측정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으나 국내가격이 HS 10단위 정도

로 세분화되어 존재하지 않아 세분화된 품목분류에 의한 관세상당액 측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셋째, 가공품에 대한 문제점;가공품은 생산된 농산물을 원료로 다시 일정한 생산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때 가공품의 가격차는 원료 농산물의 가격차 뿐만 아니라 가공품생산의 생산과정에서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가공품의 관세상당액을 가공품에 투입된 원료 농산물의 관세상당액과 원료의 비율만을 고려하여 측정할 경우 각국의 가공품생산의 생산성 차이와 여기에 발생하는 가격차 요인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는다.

네째, 품질계수 적용의 문제점;농산물은 국제교역에서 동질적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엄밀하게 농산물은 결코 동질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품질의 차이에 대해서는 관세상당액 측정에 있어 적절한 품질계수를 이용해 품질(중)의 차이를 관세상당액에 반영시켜야 마땅하다. 예를 들어 일본산 후지사과가 한국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한국산 후지사과와 가격차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품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격차의 비율을 품질계수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세상당액 측정 대상품목들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격차에 의한 품질계수 추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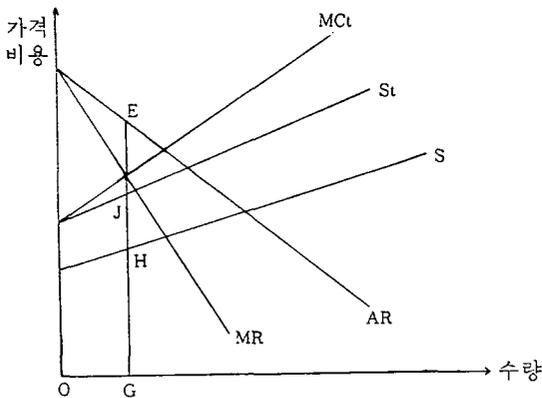
IV. 關稅相當額 適用의 限界

비관세조치와 동일한 보호효과를 가진다는 관세상당액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등하지 않다. 그동안 관세상당액과 비관세조치(특히 수입할당제)의 동등성(Equivalent)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킨들버거(Kindeberger 1968)는 시장이 독점적이지 않으며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곡선이 알려져 있고 그 상품이 국내외시장에서 동질적이라면, 수량제한과 관세상당액에 의한 수입규제는 그 효과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수입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의 귀속에 대한 차이이라는 것이다. 관세제도에 의한 수입규제의 경우, 수입에 따른 관세는 정부에 귀속된다. 그러나 수입할당제의 경우, 수입업자, 수출업자, 정부 모두가 수입할당제 적용에 따른 렌트(Rent)를 획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누가 독점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독점력을 발휘하는 쪽이 렌트를 획득하게 된다. 정부는 수입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렌트를 환수할 수 있다. 정부가 수입할당제에 따른 렌트를 환수할 경우 수입할당제와 관세제도는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량규제와 이에 상응하는 관세상당액은 다음과 같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동등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수출국의 공급이 경쟁적일 것 둘째, 국내생산이 완전경쟁적일 것 셋째, 수입할당제에 의한 수입이 수입업자들간의 완전경쟁에 의해 이루어 질 것 등이다. 그러나

Yadav와 Shibata는 완전경쟁 대신에 전자는 수출국의 공급이 독점적인 경우, 후자는 수입업자가 독점적인 경우 보호효과 면에서 수입할당과 관세가 동등할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Yadav는 수입업자가 독점적인 경우의 동등성을 <그림 1>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무관세의 경우 수출국의 공급곡선을 S라 하면 관세 t(JH)하에서 수출국의 공급곡선은 St가 되며 한계 비용곡선 MCt가 될 것이다. 또한 수입국의 순수입 수요를 AR이라 하면 한계수입곡선은 MR이 될 것이다.

그림 1 수입업자가 독점적인 경우 동등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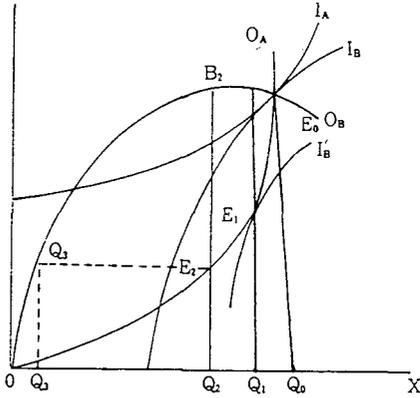
관세하에서 독점수입업자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MR=MCt$ 에서 수입량을 OG로 결정할 것이다. 이때 국내가격은 EG, CIF 가격은 HG, 관세부과후 수입품의 가격은 JG가 될 것이다. 관세부과의 경우 수입량 OG를 Quota로 바꾸면 국내가격은 GE로 되어 관세와 수입할당은 동등한 보호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Bhagwati는 역으로 Quota OG를 관세로 바꿀 경우 동등한 보호효과를 가지기 위해 앞서의 관세 t(JH)보다 높은 EH를 부과해야 할 것이며

높은 관세의 부과로 수입량은 관세 t부과시의 경우 OG보다 감소하게 되어 그 동등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hagwati는 유사한 방법으로 Shibata의 동등성도 반박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논의는 수입할당제와 관세가 동등한 보호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가정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경제에서 관세상당액과 수입할당에 의한 수입제한이 같은 효과를 갖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밖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Fishelson and Flatters 1973), 상대방의 무역보복이 있을 때(Rodrigues 1982)에도 관세상당액과 수량규제가 동등하지 않다. 관세의 경우 상대국의 보복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교역국간에는 균형교역량이 존재하며 최적 관세율을 부과하는 국가의 효용이 자유무역보다 증가할 수도 있다(Johnson 1953). 그러나 수입할당제에 의한 교역국간의 무역보복은 결국 교역량을 존재시키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어느 국가이든 효용이 자유무역보다 감소한다는 점에서 관세와 수입할당은 동등할 수 없다.

<그림 2>에서 O_A , O_B 는 각각 A국과 B국의 오퍼곡선(offer curve), I_A 와 I_B 는 각각 A국과 B국의 무차별곡선, Y와 X는 재화를 나타낸다. 자유무역 상태에서의 균형점은 E_0 이다. 만약 B국이 최적 수입할당제를 도입하여 수입량을 Q에서 Q_1 으로 감축하면 B국의 오퍼곡선은 OB_1Q_1 이 되고 A국은 수출할당제를 도입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다. 이때 최적 수출할당량은 Q_1 이 된다. 그러나 이때 A국의 수출입은 E_1 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림 2 수량규제에 의한 무역보복과 교역량



즉 수출은 Q_1 이나 수입은 미결정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되면 A국은 다시 수출할당량을 축소하게 되며 이때 A국의 오퍼곡선은 OE_2B_2 가 된다. 이때 B국의 교역은 E_2 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B국은 이러한 교역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역으로 Q_2, Q_3 만큼의 Y재에 대한 수출할당량으로 보복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보복 과정은 결국 교역량을 존재시키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교역으로부터의 효용증진도 없어지게 된다(Rodriguez 1982).

다음은 관세상당액과 수입할당제 적용에 있어서의 보다 현실적인 차이점이다.

수량규제는 수입제한효과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수출국의 공급곡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하며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공급자는 때로 가격차별이나 덤핑, 수출보조금 등의 도입으로 국제시장을 왜곡시킨다. 수량제한은 이러한 국제시장의 불확실성을 국내산업에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다. 덤핑, 수출보조금 등은 관세의 산업보호효과를 약화 또는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한 수출국의 수요와 공급곡선이 매우 비탄력적일 경우(농산물시장의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 관세에 의한 수입규제로는 국내가격의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며, 따라서 소비와 생산에 미치는 관세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이 경우 수입할당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그밖에도 행정적 편의성에 있어 수량제한이 선호된다. 관세제도는 현행 규범내에서 그 신축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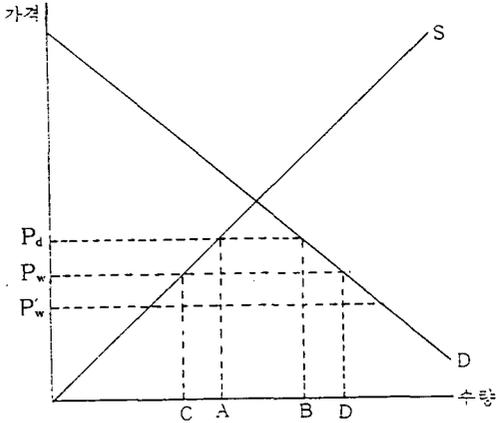
관세는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관세는 국제가격의 변화에 의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산량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수량제한은 국내의 가격 연관효과를 차단하여 국내경제가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수량규제조치를 관세상당액으로 전환하여 적용시킬 경우 국내산업에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은 국제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내생산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수량규제와 관세상당액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림 3>에서 S는 공급곡선, D는 수요곡선 P_d 는 국내가격, P_w 는 국제가격, P_w' 은 하락된 국제가격을 나타낸다.

수입수량을 AB로 제한할 경우 국내가격은 P_d 가 된다. 이에 상당하는 관세는 $P_d - P_w$ 가 될 것이다. 완전 경쟁적 시장하에서 관세 $P_d - P_w$ 와 수량규제 AB는 동등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만약 국제가격이 P_w 에서 P_w' 으로 하락할 때 수량규제 AB의 경우 국내가격은 P_d 로 변화하지 않으나 관세의 경우 국내가격은 국제가격 하락분만큼인 P_w 로 하락한다($P_d - P_w = P_w - P_w'$).

그림 3 국제가격변동과 수입규제효과



이때 국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내경제의 변화는 수량규제와 관세에 있어 크게 다르다. 수량규제로 수입제한을 할 경우 국내경제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관세에 의한 수입제한의 경우 국제가격 하락은 국내가격을 P_w 로 하락시키고 국내생산을 0A에서 0C로 감소시키며 소비는 0B에서 0D로 증가시킨다. 따라서 수입은 AB에서 CD로 증가시키는 반면 생산은 크게 위축된다. 이와 같이 관세에 의한 수입규제의 경우 국제가격 변동이 국내경제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이와 같은 관세화의 역효과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UR협상에서 논의된 것이 EC의 수정요소¹(Corrective Factor)와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긴급규제조치(Special Safeguard)²이다.

V. 要約 및 結論

미국은 관세화를 제안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왜곡시켜온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명료화하고 더 나아가 UR협상을 용이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중국에는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로 가져감으로써 국제무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국은 심한 입장차이를 보였으나 의장초안에 따라 관세상당액을 제출한 바 있다. 관세상당액 산출방식은 가격차 방식이 채택되었으나 국내외가격 선정상의 문제, 품목 분류상의 문제, 가공품에 대한 문제, 품종 및 품질차이를 반영하는 품질계수 적용의 문제 등으로 측정된 관세 상당액의 정확성은 불명확하다.

또한 관세화가 비관세조치(특히 수입할당제)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기 위해서는 국내외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

¹미국 및 케언즈그룹의 관세화에 대한 EC의 대응 논리의 하나로 국제시장가격의 변동의 일부분을 수정요소로 간주하여 이를 반영하여 관세화하는 주장이다. 예컨대 국내가격이 300원, 국제가격이 200원이면 최초년도(t 기)의 관세상당액은 100원($300 - 200$)이 된다. 이때 매년 관세상당액을 10%감축할 경우 $t+1$ 기의 관세상당액은 90원, $t+2$ 기는 80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가격이 200원으로 변동이 없을 경우의 수입가격은 t 기에는 300원, $t+1$ 기에는 290원, $t+2$ 기에는 280원으로 점진적인 감축이 가능하다 만약 $t+1$ 기에 국제가격이 100원으로 하락할 경우 단지 관세상당액만 부과한다면 수입가격은 190원(국제가격 100원 + 관세상당액 90원)으로 되어 국제가격 변동폭 100($200 - 100$)이 그대로 국내시장에 반영된다. 이때 국제가격 변동폭 100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Franchise Effect)과 반영하지 않는 부분(Corrective Effect)로 나누어 Franchise Effect를 20으로 하고 Corrective Effect를 80으로 한다면 $t+1$ 기의 수입가격은 270(국제가격 + 관세상당액 + Corrective Effect)이 되어 수입가격의 변동폭이 크게 완화된다.

²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세계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시 관세인상만을 허용하도록 한 조치로서 미국에 의해 구체화되었다(기존의 GATT 19조 Safeguard조항과는 무관). 그 적용이 까다롭고 관세인상폭도 낮아 EC의 Corrective Factor보다 그 효과가 극히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측상의 오차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경제하에서 관세상당액과 수입할당제에 의한 수입제한 효과가 같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농업보호는 지금까지 수량제한을 통해 국제시장의 가격변동을 차단하여 보호하여 왔으나 국경조치를 관세화로 가져갈 경우 국내농업은 국제시장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 등 대외적 조건에 따라 크게 변동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보호는 선진국과는 달리 국경보호조치에 의한 농업보호 비중이 매우 크고(대부분의 품목이 90% 이상) 국경보호조치에 의해 보호) 국내보조비중이 적어 관세화를 수용할 경우 국내농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관세화 이행과정 중 이에 따른 역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EC의 보정요소 및 미국의 긴급구제 조치가 논의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내농업은 국제화 개방화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보호가 수량제한으로 가능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모든 비관세조치가 관세화될 경우 관세정책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기존의 관세정책의 보완 및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농산물의 계절성 및 가격변동이 심한 점을 감안하여 조정관세, 긴급관세, 차액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등 관세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관세수입의 농업환원을 통해 국내농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1985~89.
 경제기획원, 「물가연보」, 1986~89.
 농림수산부, 「낙농관계자료」, 1986~88.
 —————, 「농수산물가격편람」, 1986~89.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농산물 도매가격동향」, 1986~88.
 농협중앙회, 「농촌물가총람」, 1988.
 축협중앙회,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 1986~68.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1980.
 일본 관세협회, 「무역통계월표」, 1986~8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농업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입장과 CL/OL작성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자료, 1990. 9. 14
 Austr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Proposed Strategies for Reducing Agricultural Protection in the Uruguay Round」. Canberra, 1990.
 Bhagwati, J., "On the Equivalence of Tariffs and Quotas," in R. E. Baldwin, et. al. eds. 「Trade, Growth, and the Balance of Payments: Essays in Honor of Gottfried Haberler」, 1965.
 —————, "More on Equivalence of Tariffs and Quotas," 「American Economic Review」, 58, 1968, :142-46.
 FAO, 「Trade Year Book」, 1988.
 Fishelson, G. and F. Flatters, "The (Non) Equivalence of Tariffs and Quotas under Uncertainty," Unpublished manuscript.
 Kindleberger, C. P., 「International Economics」, Richard D. Irwin Inc. 1968.
 Rodriguez, C. A., "The Non - Equivalence of

- Tariffs and Quotas Under Retaliation,” in J. Bhagwati ed. 「*International Trade: Selected Readings*」, MIT Press, 1982.
- Shibata, H., “Note on the Equivalence of Tariffs and Quotas,” 「*Americal Economic Review*」, 58(1968):137-42.
- Yadav, G., “A Note on the Equivalence of Tariffs and Quotas,” Unpublished.